

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 운용상 제문제

2021. 3. 25. | 허 현 변호사

목차

- I. 법률 심사 및 해석에 관한 법리
- II.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
- III. 책임주체 특정의 문제
- IV.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 문제
- V. 형사처벌의 문제
- VI. 중대시민재해 해당 가능성
- VII. 정부의 지원 필요성
- VIII. 결어

I. 법률 심사 및 해석에 관한 법리

▪ 과잉금지의 원칙(비례의 원칙)

헌법 제37조 제2항

-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

방법의 적정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함

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함

법익의 균형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

I. 법률 심사 및 해석에 관한 법리

▪ 자기책임의 원칙

-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.

▪ 책임주의

-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.

▪ 명확성의 원칙

-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,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.
-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 **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**,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.

II.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

	중대산업재해	중대시민재해
책임 주체	사업주(개인사업자), 경영책임자등(법인사업자)	
안전 보건 확보 의무	제4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 - 제1~4호 	제9조 제1항(원료, 제조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 -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중인 원료·제조물의 설계·제조·관리상의 결함 - 제1~4호 제9조 제2항(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- 설계·설치·관리상의 결함 - 제1~4호
의무 확대	제5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	제9조 3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자에게 도급한 공중이용시설 · 공중교통수단
형사 처벌	형사처벌 : 제6조(중대산업재해), 제10조(중대시민재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망)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(병과 가능) - (상해)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- (재범) 5년 이내 재범시 형량 50% 가중 :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: 제7조, 제11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 50억 이하, 상해 10억 이하 벌금 	
손해 배상	제15조 : 경영책임자등 고의·중과실 → 회사 5배까지 배상 가능	
정부의 지원	제16조 제2항 : 중대재해 예상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

III. 책임주체 특정의 문제

▶ 사업주

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▶ 경영책임자등

- 가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

- 대표이사/안전담당임원/지배주주
- 발주자/분할도급 발주자{산안법 제68조(안전보건조정자)}
- 특수사례
 -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: 펀드 – 신탁업자 – 운용사 – AM – FM
 - 민투사업의 경우 : SPC – 실질지배 주주사

※ 명확성 원칙 위반?

IV.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 문제

중대산업재해	중대시민재해
<p>제4조</p> <p>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<u>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</u>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<u>관리상의 조치</u> <p>② 제1항 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</p> <p>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<u>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</u>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<u>관리상의 조치</u> <p>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<u>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</u>하는 <u>공중이용시설</u>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제1호·제4호 및 제2항 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IV.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 문제

- “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

지배·관리

유해·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 (고용노동부 해석)

도급인의
장소 관리

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 (대법원 2010도2615 판결)

※ 명확성 원칙 위반?

IV.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 문제

▪ 의무의 구체적 내용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	• 대통령령 위임 • 산안법 제14조, 시행령 제13조 제2항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과 유사?
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	
3.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	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• 대통령령 위임 • 산안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, 제38조(안전조치), 제39조(보건조치) 등 의무와 유사?

- 모든 기업이 제1,4호의 시행령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
- 특히 '관리상의 조치'가 무엇을 뜻하는지, 추상적·포괄적으로 규정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임
 - ▶ 추상적·포괄적으로 규정되면, 사후적으로 경영책임자등이 '관리상의 조치'를 다하였는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됨
- 기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건설사(대기업, 중견기업, 소기업)
 -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건설사의 비용부담/전반적인 건설공사비용 증가
 -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한 비용구조 개선의 필요성
- ▶ 법률 제16조에 따른 정부 지원의 중요성

V. 형사처벌의 문제

▪ 구성요건

: “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”

-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의미는?

ex ①

A(경영책임자등)는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그 이행에 관하여 관리하지 않았음. 그러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.

ex ②

B(경영책임자등)는 최선을 다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충실히 관리했음. 그러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, 사후적으로 사소한 관리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V. 형사처벌의 문제

▪ 구성요건

• 유사한 처벌법규 : 산안법 제167조 제1항

-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39조제1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63조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8874 판결

-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,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,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,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.

※ 책임주의, 비례원칙에 입각한 판례라는 평가

▶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경우는?

V. 형사처벌의 문제

▪ 징역형의 하한형 설정

법률 제6조 위반한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유형 및 범위는 다양. 이에 징역형과 벌금형 규정
▶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책임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가능성 높음

기존 검찰과 법원의 양형이 경하다는 비판

▶ 기존의 실무는 전체 형사체제에서 다른 사건과의 비례, 균형을 고려한 책임주의 원칙을
따른 것으로 이해

하한형을 설정한 징역형은 일반예방(위하) 효과를 고려한 것인가?

▶ 엄벌주의가 아니더라도, 책임주의에 부합한 **확실한 처벌**이 필요하다는 견해

VI. 중대시민재해 해당 가능성

법률 제9조 제1항

- 건설자재 공급업자의 경우
- 건설현장에서 종래처럼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▶ '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' 중인 원료나 제조물' 해당?

법률 제9조 제2항

- 복합건축물(건축법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) / 민투사업에 의해 건립된 도로, 철도 등
 - ※ 펀드 – 신탁업자 – 운용사 – AM – FM / SPC – 실질지배 주주사
- 준공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사를 하는 시공사?

VII. 정부의 지원 필요성

▪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

-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1.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· 시행과 발생원인 분석
 2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
 3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
 4.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
- ② 정부는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 ·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,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VIII. 결어

- 법률의 개정(보완) 필요성
-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필요성
-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
- 비례의 원칙, 책임주의에 입각한 실무 운용의 필요성

감사합니다



허 현 파트너변호사

T. 02 316 4643

E. hheo@shinkim.com

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(우)03155
TEL: 02 316 4114 | FAX: 02 756 6226

www.shinkim.com

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,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, 복제, 배포,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